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제30조의7 관련)

1.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가. 수상구조사 지도사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수상구조사 1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수상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수상구조사 2급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업무수행 범위

등급	업무수행 범위
가. 수상구조사 지도사	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의 활동 지침 수립 2)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3) 수상구조사 지도사·1급·2급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훈련·평가 4) 수상구조사 1급·2급의 업무
나. 수상구조사 1급	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의 활동 지침 수립 지원 2) 수상구조사 2급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3) 수상구조사 2급의 업무
다. 수상구조사 2급	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2)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 3) 수상안전 시설 및 장비의 운용·점검